

여관 주차장에서 생긴 차량 도난 사고

■글/김성천<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>

2천만대 이상 보급된 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 될 정도다. 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주차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. 이웃간의 폭 력 사태는 물론 주차장 이용에 따른 차량의 도난·훼손으로 인한 숙박업자와 주차장업자의 책임 여부도 논란 이 되고 있다. 최근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도난으로 인한 책임 여부에 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해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.

판례 ① 여관에 투숙하더라도 여관 부설 주차장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·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거나 투숙객이 숙박업 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맡기는 경우에만 주차 차량의 도난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여관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K씨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은 여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열쇠를 맡기지 않은 채 여관에 투숙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. K씨는 여관업자에게 여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의 도난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



대법원은 여관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. 즉 여관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 이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해 차량 관리를 여관업자에 게 맡긴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. 또한 숙박업자에게 열쇠를 맡기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숙 박업자에게는 차량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판례 ② 주차장 이용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 시간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·훼손에 한해 주차장 이용자가 관 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제의 주차장은 한 사람의 주차 관리인을 두고 주간(오전 9시~오후 9시)에만 관리하고, 야간(오후 9시~다 음날 오전 9시)에는 개방되는 주차장이다. 이곳에서는 원활한 주차를 위해 월 단위 이용자에게 차량의 예비 열쇠를 받아 관리해 왔다. 주차장 이용자 L씨는 저녁 약속이 있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두고 퇴근했다. 주차 관리인이 퇴근한 뒤 도둑이 들어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 열쇠를 꺼내 L씨의 승용차를 훔쳐 갔다. 차를 도난당한 L씨는 주차 장 관리자에게 승용차 보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.

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. 주차 요금을 월 단위로 내더라도 해당 월 내내 정해진 이 용 시간 외의 보관·감시 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여관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지, 단순 편의 제공 주차장인지 확인한 뒤 차량 열쇠를 맡기 는 것이 안전하다. 또한 월 단위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 시간, 이용 시간 이후의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내용 을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.●